

[※ 암기노트{구.정리노트} 수록]

[페이지는 2023년도 판을 기준 표시] [추가/변경된 부분에 밑줄표시함]

[p.1]

III. 본점의 등기사항과 지점의 등기사항

-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별법 및 특별규칙에 따름.
 - ① 특정에 관한 사항 ② 운명에 관한 사항 ③ 대표에 관한 사항 ④ 해당 지점
 - ⑤ 해당 지점에 둔 지배인
- 주의사항
 - ① 법인의 대표자 이외의 임원은 지점에 등기사항 아님
 - ② 지배인은 '지점을 둔 장소'를 함께 등기사항으로 하므로 본·지점 공동등기사항이 아님 <나머지는 본·지점 공동등기사항>

[p.6] II. 등기사항증명서의 구체적 발급절차 중에서

2. 무인발급기와 인터넷등기소 발급

- 무인발급기 :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발급하지 않는다. 16장 이상으로 구성된 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하지 않는다.
- 인터넷등기소 : 열람의 경우와 구별하기 위해 '제출용'임을 표시하여 발급. 50장 초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지 않는다. '서면' 등기사항증명서 뿐 아니라 '전자문서형태'의 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가능.

[p.43]

1. 개설

-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산상 또는 재산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
- . 영리적 업무를 전제로 하므로, 상인만 지배인을 둘 수 있음이 원칙
 - (상인 아닌자 : 변호사, 법무사, 의사, 사단법인, 재단법인, 세무법인 등은 지배인 둘 수 없음)
- . 영업에 한정된 자이므로, 회사 자체의 변화에는 관여할 수 없음(상업등기 신청권 없음)

[p.67] 2. 전환 절차 및 등기 → (3) 기타이슈 中에서

2) 전환권 행사시 등기기간

- 전환의 효력은 즉시 발생(형성권) : 이때로부터 등기할 수 있음
- 등기기간의 기산점(등기해태 계산) : 전환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함
 - 이때로부터 2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함

[p.119]

(4) 감사

- 민법법인 : 감사가 임의 기관 / 두어도 등기할 수 없음
- 공익법인 : 감사가 필요 기관 / 단, 등기할 수 없음
- 특수법인 : 해당 특별법에 등기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등기함
 - (등기하는 예> OO협동조합{농업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}, 정비사업조합, 세무법인, 사내복지기금)